설명자료

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

#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

2017. 1.



# 목 차

I . 부과체계 개요 및 문제점 ······· 1
Ⅱ. <b>개편 필요성 ·······5</b>
Ⅲ. 추진 시 고려사항6
Ⅳ. 부과체계 개편방향8
V. 단계적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 ········ 22
<참고 1> 1단계 달라지는 내용 상세분석/ 24
<참고 2> 1단계 기준 보험료 변동사례/ 32
<참고 3> 부과체계 개편 비교표/ 35

#### 〈 현행 부과체계 현황, 문제점 및 개편방향 〉



추진방법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개선 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 추진

\* 보험료 총액은 '16.2월 기준의 보험료 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. '15년 결산기준과 상이

# I. 부과체계 개요 및 문제점

#### 1. 부과체계 개요

- ① (적용 대상) 全 국민 가입을 원칙\*으로, ▲직장가입자, ▲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, ▲지역가입자로 구분
  - \*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(직장·지역) 또는 피부양자가 됨, 다만 기초 수급 대상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제외
- **직장**가입자 : 직장에 근무하는 **근로자 · 사용자** 및 공무원 · 교직원 등
- **피부양자** :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으로,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**재산·소득 등이 일정기준 이하**인 자
  - \* ▲사업소득이 없는 경우(사업자 未등록자는 연 500만원 이하) ▲연금, 이자·배당. 근로·기타소득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. ▲재산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등
- **지역**가입자 : 직장가입자 ·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
  - \*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, 일용근로자, 특고직(보험설계사, 택배기사 등), 은퇴자 등
- ② (보험료 부과) 직장과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기준 적용
- **직장**가입자 : 보수에 일정 보험료율('16년 6.12%)을 곱한 금액 부과,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
  - 임대·금융소득 등 **보수 外 종합과세소득\***이 **연 7,200만원 초과** 하는 고소득자는 보수 外 소득보험료 부과 (보수 外 소득 × 3.06%)
  - \* 보수 外 소득 종류 : **사업**소득(임대소득 등), **금융**소득(이자·배당소득), **공적** 연금소득, 일시적 근로소득, 기타소득(강의료, 당첨금 등)
- 피부양자 : 보험료 부과하지 않음

- 지역가입자 : ▲평가소득<sup>①</sup> 또는 종합과세소득<sup>②</sup>, ▲재산<sup>③</sup>, ▲자동차를 점수화하여 부과
  -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 당 금액(1점 당 179.6원)을 곱한 총 금액<sup>④</sup>을 보험료로 부과
  - \* 소득, 재산, 자동차 수준별 점수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점수표로 규정

<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관련 기본 개념 >

주① **평가소득** :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으로 세대원의 性・연령, 재산, 자동차, 소득으로 추정한 소득

주② 종합과세소득 :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

- \* 종합소득 : 사업소득(임대소득 등), 금융소득(이자·배당소득), 공적연금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(강의료, 당첨금 등)
-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, 일용근로소득,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등은 제외

주③ **재산** : 토지, 주택, 건물, 선박, 항공기의 **과세표준액\***(이하 "과표")에 부과 \*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가격, 실거래가의 약 50% 수준

주④ 지역 보험료는 소득, 재산, 자동차 총 점수에 179.6원을 곱한 금액 부과

- 소득 점수가 380점, 재산 점수가 22점, 자동차 점수가 18점이라면 총점은 420점, 월 보험료는 7만 5천원 (420점 × 179.6원)
- \* 1점 당 금액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결정

#### < 참고 :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>

구 분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
	▪ 보수 · 사용자 : 사업소득	• 연소득 > 500만원 초과 세대: 소득, 재산, 자동차 점수 합산
부과기준	•보수 外 소득	<ul> <li>연소득 ≤ 500만원 이하 세대: 평가소득*, 재산, 자동차 점수 합산</li> </ul>
		* 성ㆍ연령, 소득, 재산, 자동차로 산정
	■ 보수월액 × 정률(6.12%, '17)	■ 보험료 부과점수 × 점수당 금액
산정방식	•보수 外 소득 연 7,200만원 초과 : 보수 外 소득의 3.06% 추가로 부과	· 도입료 구작업무 ^ 점구 8 급격 (179.6원, '17)
납부자	• 사용자 50%, 근로자 50%	- 지역가입자 세대 100%
	• (본인부담) 8,560원~239만원 ⋆ 사용자부담 포함시 17,120원~478만원	• 3,590원~228만원 * 전액 본인부담

- \*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추이 : ('13) 5.89→ ('14) 5.99→ ('15) 6.07→ ('16) 6.12%
- \*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 추이 : ('13) 172.7→ ('14) 175.6→ ('15) 178→ ('16) 179.6원
- \* 직장가입자 수 : ('13) 1.460만→ ('14) 1.514만→ ('15) 1.576만→ ('16) 1.581만 세대
- \* 지역가입자 수 : ('13) 771만→ ('14) 775만→ ('15) 765만→ ('16) 757만 세대

#### < 참고 : 가입자 종류별 세부 부과 내용 >

	구 분	부과기준	대상자 수 (′16.2)
	① 일반근로자*	■ 월보수에 6.12% 부과	1,581만 세대
직장 가입자	② 보수 外 소득 연 7,200만원 초과자	▪(월보수×6.12%) + (보수 외 소득 × 3.06%)	3.9만 세대
	③ 피부양자	■ 보험료 미부과	2,049만명
지역	④ 종합과세 소득 연 500만원 초과세대	■ 소득·재산·자동차에 부과	185만세대
가입자	⑤ 종합과세 소득 연 500만원 이하세대	■ 평가소득*·재산·자동차에 부과 * 성·연령, 소득, 재산, 자동차로 산정	572만세대

\* 일반근로자 수는 증번호 기준 (실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및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등으로 증번호 2개 이상 보유한 사람 포함)

#### 2. 현행 부과체계 주요 문제점

#### ① 지역가입자

- (**평가소득**) 성·연령, 재산,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에 불만
  - 성·연령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여,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 출생이나 연령 상향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
  - 재산·자동차는 평가소득에서 부과하고, 재산·자동차 보험료로 한 번 더 부과하게 되는 이중 부과 문제 제기
  - \* 평가소득(성ㆍ연령, 소득, 재산, 자동차), 재산, 자동차 보험료 부담
- (재산·자동차) 소득 보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과중
  - \*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중('16.2월): 재산·자동차 (58%), 성·연령 (10%), 소득 (32%)

#### ② 피부양자

-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하여 **충분한 소득과 재산**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,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
  - 금융소득 4천만원, 연금소득 4천만원, 근로+기타소득 4천만원으로 최대 **1.2억원의 종합소득**을 보유하더라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
  - 과표 9억원(실거래가 약 18억원)의 재산을 보유해도 피부양자 가능

## ③ 직장가입자

- 보수 外 **고액의 이자·배당·임대소득**이 있어도 연간 7,200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보수 外 소득 보험료 **未부과** 
  - 보수 外 소득이 연 7,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外 소득보험료가 "0", 7,201만원이면 월 18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**절벽현상** 발생

# Ⅱ. 개편 필요성

- ◆ '송파 세 모녀'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은 과중하게 부담시키면서 고소득자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未부담한다는 형평성 논란
- ① 소득 파악률은 과거에 비해 지속 개선되어,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\*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약 89%('13, 국세청)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(국민소득계정법) : ('11) 64% → ('14) 75%
- 소득 파악 여건이 개선되었어도, **지역가입자**는 성·연령과 재산, 자동차에도 부과하는 **17년** 前에 마련된 **부과체계**가 **유지**되어 불만
-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고소득 피부양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
- 저소득층인 **'송파 세 모녀'**에게도 매 월 4.8만원의 보험료를 부과
- 반면, 소득·재산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가능
  - $\star$  현재 연간 종합소득 1.2억, 시가 18억 주택 보유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가능
- ③ 고령화에 대비하여 「근로시기와 은퇴시기」의 생애주기(life cycle)를 고려한 적정 부과 기준 마련\* 필요
  - \* 한 개인이 근로시기에는 직장가입자, 은퇴시기에는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 여건에 맞는 적정 부담 필요
- 직장가입자가 **퇴직 후** 지역가입자가 되면, 소득이 감소해도 재산 때문에 **더 많은 보험료**를 내는 경우를 최소화하고
- 고령사회 진입(\*18), 베이비부머 세대 본격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피부양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前에 **피부양자 기준**을 **정비**할 필요

# Ⅲ. 추진 시 고려사항

- ◆ 직장·지역 구분 없는 「소득일원화 개편」이 가장 이상적이나, 가입자 간 소득파악 차이,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
- ◈ 형평성・수용성・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득 파악과 연계,
  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다계적 개편이 현실적

#### ① 가입자 間 형평성 : 소득파악 개선 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개편

-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**소득 파악 차이** 
  - **지역**가입자의 **50%**가 과세자료가 없고(소득 0), 과세자료가 있는 나머지의 **50%**도 연간 소득이 **500만원**(월 42만원) 이하로 신고
  - 직장인 보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나, 지역가입자는 현금 거래, 필요경비 과다 산정 가능성 등으로 아직 정확한 소득 확인 한계

<지역가입자 소득신고 현황>	<직장가입자 소득신고 현황>
76 %. 연소득 500만원 이하 신고	
50 % 26 % 24 %	0 %
연소득 0 연소득 0~500만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	소득미신고

- 보수(근로소득) 및 사업소득 간 **부과 기준** 상이
- 직장인 보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나, **지역** 가입자는 **본인이 전액 부담**
- 직장인 보수는 "근로소득공제 前 총 보수"에 보험료를 부과하나,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은 "필요경비(60~90%) 공제 後 소득"에 부과
- 소득보유자 vs 자산보유자 가 차이
  - 실물자산 보유 경향이 높아,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있음
  - \* 노인 자산 중 非금융 비중(보험硏, '15) : (한국) 86%, (미국) 56%, (스웨덴) 60%

- 2 수용가능성 : 보험료 인상자 수, 인상 폭을 고려한 단계적 개편
- **피부양자**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, 보험료 **신규 부담** 
  -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대다수는 **은퇴한 연금소득자**로 고령층의 **급격한 부담 증가** 예상
  - \*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9만 명 중 연금소득자는 170만 명(60%)
  -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뿐 아니라 재산보험료도 함께 부담
- **직장가입자**의 보수 外 소득 보험료 추가 부담 시, 직장가입자에 대한 **과도한 부담** 문제

#### ③ 지속가능성 :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재정소요 연차적 분산

- **재산·자동차** 부과를 한 번에 없애는 경우, 연간 **4조원 손실**이 발생하며,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누군가 더 부담 필요
- 피부양자를 전면 폐지하거나, 현재 부과하지 않는 일용근로소득, 퇴직금에 부과 시, 고령충・일용근로자・실직자 부담 증가 가능성
  - 그렇지 않으면, 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이 불가피하여 지역 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대신 **모든 국민**이나 **가입자 부담** 증가
- ☞ 추가 재정 또는 보험료 인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 개편

#### 【 재산・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(△4조원/년)에 따른 추가 부담】



# Ⅳ. 부과체계 개편방향

## ◈ (비전)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

- ① (기본 방향) 「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」
  - \* 소득 보험료 비중: (전체) 현행 87% → 3단계 **95%** (5%는 지역가입자 재산 부과), (지역) 현행 30% → 3단계 **60%**
- ② (중장기 목표) 형평성, 수용성,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 부과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 추진
-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「소득일원화 개편」이 가장 이상적이나,
- 소득 파악 차이, 소득 종류(근로, 사업소득)별 부과기준 차이, 보험료 인상자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고려 시, 단계적 개편 필요
- ③ (**단계적 개편안**) **3년 주기**의 3단계 개편 추진
- **지역**가입자 : 성·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우선 폐지
  -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**소득 부과** 비중을 **확대**
- **피부양자** : 소득과 재산을 많이 보유한 피부양자부터 단계적 **축소** 
  -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**재산보험료 완화와 연계**하여 대상자 축소
  -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**재산**을 보유하고 **생계 가능 소득**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보험료 부과
- **직장**가입자 : 고액의 보수 外 소득(임대·이자소득 등)을 보유한 경우 보수 外 소득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

#### 1. 지역가입자

#### ①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

○ (현행) 연 소득 500만원 이하<sup>①</sup>는 성·연령, 재산, 자동차, 소득으로 추정한 '평가소득'에 대한 보험료 부과

주① :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 방법

- (1)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원재료비, 교통비 등 경비("필요경비") 제외
- (2) 필요경비율은 업종별로 60%(부동산업) ~ 90%(전기・수도・가스업) 수준
- ☞ 필요경비율 90% 고려시, 총 수입 연 5천만원
- (개편)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는 최저보험료 적용
  - **1단계**는 연소득 **100만원** 이하 (필요경비율 90% 고려 시 총수입 **연 1,000만원** 이하)에게 적용하고
  - **3단계**는 연소득 **336만원** 이하 (필요경비율 90% 고려 시 총수입 **연 3,360만원** 이하) 지역가입자로 대상 확대

<최저보험료 적용 개요>

구분	1단계	3단계
최저보험료	연소득 100만원 <sup>*</sup> 이하	연소득 336만원 <sup>*</sup> 이하
적용대상	* 필요경비율 최대 90%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,000만원 이하	* 필요경비율 최대 90%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,360만원 이하
	13,100원/월	17,120원/월
최저보험료 수준	*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%(성·연령 보험료 등)	* 직장 최저보험료 ('17, 사용자부담분 포함)

-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**현행** 보험료 **수준 유지** (인상분 전액 경감)
- \* 1~2단계는 인상분 전액 경감, 3단계부터 인상분 50% 경감하되,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추가 경감을 통해 부담 최소화

#### 2 소득보험료의 역진성 개선

- (현행)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
- (개편) 1단계는 저소득층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%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(1단계), 역진성을 단계적으로 개선
  - 3단계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소득보험료(6.12%)로 개편

#### ③ 재산보험료 부담 축소

- (현행)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, 전세 (無 주택)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%로 환산하여 부과
  - \* 전세의 재산환산 방식 : (전세보증금 500만원) × 30%
- (개편)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**공제제도를 도입**, 공제금액 단계적 상향
  - **1단계**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, **500만원에서 1,200만원까지** 공제\*
  - \*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,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
  - **2단계**는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인 과표 **2,700만원** 공제, **3단계**는 하위 60% 재산인 과표 **5,000만원** 공제

Ŧ	'분	1단계	2단계	3단계
공제	]금액	500~1,200만원	2,700만원	5,000만원
* 과3	표 기준	* 지역가입자 중위재산	* 유재산 중위재산	* 유재산 하위 60% 재산
재산	자가 소유	1,200만원 이하	2,700만원 이하	5,000만원 이하
보험료	* 과표 기준	* 시가 2,400만원 이하	* 시가 5,400만원 이하	* 시가 1억원 이하
면제	무주택 전월세*	4,000만원 이하	9,000만원 이하	1억 6,700만원 이하
. –	보험료  -세대	349만 세대	568만 세대	582만 세대

\* 전월세 재산환산 방식(개편): (전세보증금 × 30%) - 공제금액

#### ④ 자동차 보험료 부담 축소

- (현행)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(영업용은 제외)
- (개편) 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
- **1단계**는 ▲배기량 1,600cc 이하 **소형차**(4천만원 미만), ▲9년 이상 자동차, ▲승합차·화물·특수자동차 부과 **면제**
- 3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

#### [5] **공적연금 및 일시근로소득 반영률 상향** \* 직장 보수 外 소득도 동일

- (현행)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공적**연금**소득,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%에만 보험료를 부과
  - \* 종합과세소득 반영률 : 공적연금, 일시적 근로 20%, 금융·사업·기타 100%
- (개편) 반영율을 30%(1단계)에서 **50%**(3단계)**까지** 단계적으로 상향
  - 연금 보험료 납부 시 사용자가 부담한 수준(50%)까지 반영률을 높이되, 단계적으로 10%p씩 상향

#### 6 보험료 변동 및 재정 소요

구분	1단계	3단계
(전체 지역가입자)	(757만 세대)	
보험료 인하	583만 세대	606만 세대
보험료 인상*	34만 세대*	16만 세대**
보험료 무변동	140만 세대	135만 세대
연간 재정 소요(현행 대비)	△1조 2,780억원	△3조 982억원 *1단계 대비 △1조 8,202억원 추가 소요

- \* 상위 2% 소득, 상위 3% 재산 부과 확대로 1단계에서 34만 세대 보험료 인상
- $^{**}$  재산공제가 1단계  $500\sim1,200$ 만원에서 3단계 5,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인상자도 단계적 축소

# <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표 >

# ① 소득 보험료

구 분	현 행	1단계	2단계	3단계
<ul> <li>◈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</li> <li>* 총 수입에서 재료비, 교통비 등 경비("필요경비") 제외한 소득, 필요경비율이 총 수입의 최대 90% 고려 시, 연간 총 수입은 최대 5,000만원 &lt;필요경비율은 업종별로 60~90% 수준&gt;</li> </ul>				
평가소득 보험료	평가소득 적용 * 성·연령, 재산, 자동차, 소득 추정	평가소득 폐지, 종합과세소득 적용		
	HIF 그지 어이	_ ,	)만원 이하 10% 고려 시, 연간 총 원 이하	336만원 이하 * 연간 총수입 최대 3,360만원 이하
최저 보험료	별도 규정 없음 * 소득·재산없으면 20점(월 3,590원)	13,100 * 현행 연소득 100만원 보험료(2.6만원)의 5	,	17,120원/월 * 직장 최저보험료 수준
보험료 경감	□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보다 낮은 경우 또는 평가소득 세대 중 보험료가 인상되면 2단계까지 現 보험료 수준 유지 □ 3단계부터는 인상액의 50% 경감 및 저소득 세대에 대한 추가 경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없도록 추진			
<ul> <li>◈ 연간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</li> <li>* 필요경비율 최대 90% 고려 시, 연간 총 수입은 5천만원</li> </ul>				
소득 보험료	소득등급표 적용 (75등급)	소득등급표 적용 (100등급) *상위 2% 보험료 인상	소득등급표 적용 (100등급) *역진성 개선	등급 폐지 소득×보험료율 •정률제 도입

# ② 재산 보험료

구 분	현 행	1단계	2단계	3단계
재산 공제 (과표기준)	없음	500~1,200만원 공제	2,700만원 공제	5,000만원 공제
재산 등급표	50등급		60등급 원 재산(상위3%)부터 5 특 보험료 구간 10등급	

# ③ 자동차 보험료

구 분	현 행	1단계	2단계	3단계
부과대상 자동차	15년 이하 모든 자동차	1,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(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부과) 9년 이성 승합차·화물차·	,	4천만원 이상 고가 차만 부과

# ④ 소득 반영율

구 분	현 행	1단계	2단계	3단계
공적연금 일시적 근로소득	20%	30%	40%	50%
금융, 사업, 기타소득		100%		

## 2. 피부양자

#### 1 소득 요건 강화

- (현행) ▲금융, ▲공적연금, ▲근로+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
  - \* 연간 35만 명. 현행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('15)
- (개편) **종합과세소득**을 **합산**한 금액 기준 적용
  - 1단계 연 3,400만원(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, '17)을 초과 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 강화\*
  - \* (1단계) 연 3,400만원(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<sup>\*\*</sup> 100%, '17) → (2단계) 2,700만원(80%) → (3단계) 2,000만원(60%) 초과
  -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**일부\*에만 보험료 부과**
  - \* (1단계) 연금소득 30%에 부과 → (3단계) 연금소득의 50%에 부과

#### ② 재산 요건 강화

- (현행) 과표 9억원(시가 18억 상당)을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피부 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
  - \* 연간 5만 명, 현행 재산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('15)
- (개편)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**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**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
  - 재산이 ▲1단계 과표 5.4억원, ▲2~3단계 3.6억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(연 1천만원 이상)이 있으면 보험료 부담
  - \* (1단계) 재산 과표 5.4억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→ (2~3단계) 3.6억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
  - \*\*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, '17년 연 1천만원

## ③ 피부양자 인정범위 축소

- (현행) 부모, 자녀 등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·자매까지 광범위 하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
- (개편) 1~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하여, 형제·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, **3단계에서**는 원칙적으로 **제외** 
  - 다만, 장애인, 30세 미만, 65세 이상인 형제·자매가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인정

## ④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

구분	1단계	3단계	
(전체 피부양자)	(2,049만명, 이 중 有 소득자 279만명)		
지역가입자 전환	7만 세대 (10만명)	47만 세대 (59만명)	
소득기준 초과	6만 세대	21만 세대	
재산기준 초과	1만 세대	2만 세대	
ອ제 · 자매제외	0	24만 세대	
연간 재정 변동 (현행 대비 수입 증가	+1,486억원	+4,290억원 *1단계 대비 +2,804억원 추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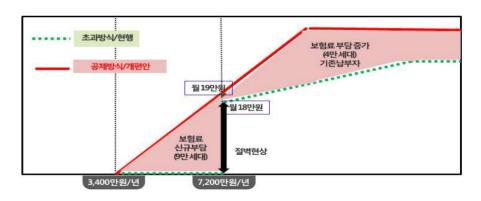
#### <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>

구 분	현 행	1단계	2단계	3단계
	종합과세소득 (▲금융, ▲연금, ▲근로+기타) 중 어느 하나 각 4천만원 초과 (합산 최대 1.2억까지 가능)	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 기준		
<b>소득</b> 기준		<b>3,400만원*</b> 초과 * 2인가구 중위소득 100%('17)	<b>2,700만원*</b> 초과 * 2인가구 중위소득 80%('17)	2,000만원* 초과 * 2인가구 중위소득 60%('17)
	9억원 초과	① 9억원 초과		
재산기준		② <b>5.4억원</b> ~ 9억원이면서, 생계가능 소득이 있는 경우	9억원 <sup>6</sup> 생계가능	<b>억원 ~</b> 기면서, ÷ 소득이 경우
* 과표재산, 시가의 1/2 상당)		* 생계가능소득 :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2인가구 <b>생계급여 기준소득</b> (1,000만원, '17) 초괴		
	(형제·자매의 경우	-)		
	3억원 초과	1.8억원 초과	* 3단계는 장애인	년 초과 , 65세 이상, 30세 장애만 해당
피부양자 인정범위	형제ㆍ자매 인정	(현행	유지)	형제 · 자매 제외 * 장애인, 65세 이상, 30세 미만의 형제 · 자매는 피부양자 가능

# 3. 직장가입자

#### ① 보수 外 소득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

- (현행) 보수 外 연간 7,2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보수 外 소득에 보험료 부과 (4만 세대)
- (개편) 1단계는 연 3,400만원(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, '17)을 초과 하는 경우 부과하고 **단계적**으로 **강화**\*
  - \* **(1단계)** 연 3,400만원(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, '17) → **(2단계)** 2,700만원(80%) → **(3단계)** 2,000만원(60%) 초과
  - 부과 방식도 절벽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 外 소득에 일정 금액 공제 후 보험료율을 곱하는 **공제방식**을 적용
  - \* (현행) 연간 보수 외 소득× (1/12) × **3.06%** (개선) (연간 보수 外 소득 - 공제금액)× (1/12) × **6.12%**



# ② 보수 보험료 상한선 상향

- (현행) 보수 보험료 상한선은 '11년 이후 고정
  - \* 前년도(2010년)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험료의 30배 수준 규정. 월 239만원

- (개편) 前前년도 직장가입자 보수보험료 평균의 30배 (301.5만원/월, '15년 기준) 수준으로 개선
  - 직장 보수, 보수 外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게 동일 적용
  - \* 월 보험료 상한, 본인부담 기준: (현행) 직장 보수보험료 239만원, 보수 外 소득 보험료 239만원, 지역보험료 228만원 → (개선) 301.5만원

#### ③ 보험료 변동 및 재정수입 증가

구분	1단계	3단계
(전체 직장가입자)	(1,581만 세대, 이 중 보수	外 소득보유자 214만 세대)
보험료 인상	13만 세대	26만 세대
보험료 무변동	1,568만 세대	1,555만 세대
연간 재정 변동 (현행 대비 수입증가)	+2,205억원	+3,584억원 *1단계 대비 +1,379억원

# <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변경 표 >

구 분	현 행	1단계	2단계	3단계
	◈ 대상자			
	보수 外 소득이 연	간		
	연간 7,200만원	<b>3,400만원</b> * 초과	<b>2,700만원</b> * 초과	<b>2,000만원</b> * 초과
보수 外 소득보험료	초과	*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('17)	* 80%('17)	* 60%('17),
부과기준	◈ 산정기준			
	보수 外 소득 × (1/12) × 3.06%	[보수 外 소득-3,400만원] × (1/12) × 6.12%	[보수 外 소득-2,700만원] × (1/12) × 6.12%	[보수 外 소득-2,000만원] × (1/12) × 6.12%
보수 보험료 상한선	월 239만 원  * '10년 직장 평균 월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 고정	前前년도 직장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(주기적으로 조정) * '15년 기준 301.5만원/월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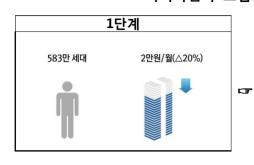
# 4. 총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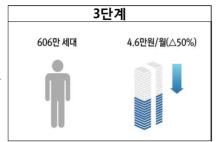
주요 부과기준		1단계	2단계	3단계		
			노득 험료	평가소	득 폐지, 종합과세소득	두 적용
		최저		연 소득 100만원 <sup>*</sup> 이하 (13,100원/월)		336만원* 이하 (17,120원/월)
	지역		보험료	* 연간 총수입	1,000만원 이하	* 연간 총수입 3,360만원 이하
1	가입자		배산 험료	500~1,200만원 공제	2,700만원 공제	5,000만원 공제
		자동치	· 보험료	1,600cc 이하 소형차 면제	3,000cc 이하 중·대형차도 면제	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
				4천만원 이상	고가차는 부과	고기자 한 기위
		소득기준		종합과세소득 합산	금액이 연간	
			g, 연금, 일+기타	3,400만원 초과	2,700만원 초과	2,000만원 초과
2	퍼 어느	- 하나 만원 초과	*2인가구 기준중위소득('17)	*중위소득 80%('17)	*중위소득 60%('17)	
	。 자	   재신	· 난기준	과표 5.4억 초과	과표 3.6억 초과	
		*과표 9	억원 초과	5.4억(3.6억) ~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(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, 연 1천만원, '17') 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		
			外 소득 험료	3,400만원 초과	2,700만원 초과	2,000만원 초과
3	직장		임묘 - 대상	*2인가구 기준중위소득('17)	*중위소득 80%('17)	*중위소득 60%('17)
	가입자		성방식 식, 3.06%)	3,400만원 공제 (공제방식, 6.12%)	2,700만원 공제 (공제방식, 6.12%)	2,000만원 공제 (공제방식, 6.12%)
	재정소요		1단계	2단계	3단계	
	현행대비 총 재정 변동(연간)		△9,089억원	△18,407억원	△23,108억원	
					(1단계 대비 △9,318억원)	(2단계 대비 △4,701억원)
	지역가입자		△12,780억원	△24,211억원	△30,982억원	
	피부양자(지역가입자로 전환)		+1,486억원	+3,038억원	+4,290억원	
		직	장가입자	+2,205억원	+2,766억원	+3,584억원

\* 연간 재정소요는 현 시점 기준으로 소득자료 연계 확대, 소득파악률 제고, 지역 가입자 감소 추이 등은 未 반영된 수치 (반영 시 재정 소요 감소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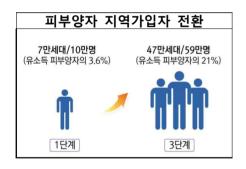
## 5. 기대효과

## <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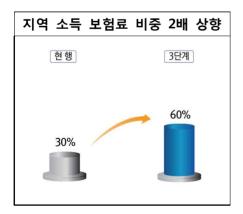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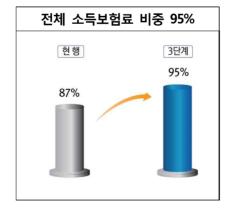
## <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外 고소득 직장인 적정 부담>





# <소득보험료 비중 상향>





# 6. 대상별 보험료 변동 사례

		현행	1단계	특징
	송파 세모녀	월 4.8만원	월 1.3만원	50만원 월세 어렵게 생활한 세 모녀
지 역 가	전월세 세입자	월 7.9만원	월 1.8만원	연소득 150만원 (총수입 연 1,500만원) 4천만 원 전세 1,600cc 이하 자동차
입 자	퇴직자	월 7.9만원	월 4.8만원	연소득 424만원 (총수입 연 4,240만원) 5천만 원 전세 1,600cc 이하 자동차
	생계형 체납자	월 2.5만원	월 1.3만원	전세 2,800만원 자동차 없음
피부	소득기준 초과	0	월 21.3만원	연금 3,413만원/년 재산 과표 3억 660만원
피 부 양 자	재산기준 초과	0	월 20.2만원	연금 1,941만원/년 재산 과표 5억 5천만원
	일반 직장인	월 10.4만원	월 10.4만원	보수 外 소득 없음 보수 월 340만원
직	1주택 소액 임대소득자	월 7.7만원	월 7.7만원	보수 월 250만원 1주택 보유, 월세 임대
직 장 가 입 자	고액 금융소득자	월 9만원	월 26.7만원	보수 월 295만원 이자 연 3,277만원 배당 연 2,835만원 사업소득 749만원 (필요경비율 90%, 총수입 연 7,490만원)
	고액 상가 임대소득자	월 9.2만원	월 22.5만원	보수 월 300만원 임대소득 연 6,000만원

# Ⅴ.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

# 1 3년 주기 단계적 개편 추진 이행 방안

- (필요성) 단계적 개편은 시행 성과, 소득 파악 개선 등 **적정성・** 형평성 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
- (과제) 전문가 중심의 **평가단**을 **구성・운영**하여 체계적인 평가 기반 마련

## ②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'소득 파악 여건 개선'

- (필요성)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는 여건 전제될 필요
- (과제) 소득 파악 여건 개선을 위해 「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혐의체」를 구성·운영하고
  - **지역**가입자의 **소득** 상황을 주기적으로 **조사**하고 **평가**할 수 있는 인프라 강화

#### ③ 재원 조달 대책

- (필요성) **1단계**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**9천억원** 소요, **3단계** 개편 시 현행 대비 연간 약 **2.3조원**(1단계 대비 +1.4조원) 소요되어
  -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
  - \* 재정소요는 '16.2월 기준으로 소득파악 제고, 지역가입자 감소 추이 등 未 반영 소득파악 제고 효과, 지역가입자 감소 추이 등 반영 시 재정소요 감소 전망
- (과제) 수입 측면에서는 소득파악 개선,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효율화 대책 추진

# <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(안) >

- 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
-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급여 적용 前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('17)
-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,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

#### ② 급여비 적정 관리

- (수가제도 개편)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,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
- (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)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
- (심사체계 합리화) 공단·심평원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
- (일차의료 강화)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

#### ③ 약제비 절감 대책

- (사후관리 지속)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
- (약품비 총괄관리 검토) 제약사-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 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·관리하는 방안 검토
- ④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개선
- 상품구조,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

## 참고 1

## 1단계 달라지는 내용 상세분석

#### 1. 지역가입자

- ◆ 지하 윌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 모녀' 보험료는윌 4.8만원에서 1.3만원으로 감소
- ◆ 지역가입자 77% (583만 세대) 보험료는 20% (월 2만원) 감소
- ①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, 최저보험료 도입 (454만 세대 인하)



# ② 재산 보험료 (349만 세대 인하)

- 세대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, **500만원에서 1,200만**공제\*
- \* 세대 구성원 총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, 과표 1,200만원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위 재산
- 재산 **상위 3%**의 지역가입자는 "재산보험료 인상"
- \* 과표 5억 9,700만원 (시가 12억 상당)을 초과하는 상위 3% 23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(월 평균 1만원)

#### < 재산보험료 부담 변화 >

_			인상 상위 3%
하위 40%	하위 60%	무변동	재산
	인하		
재산보험료 0			

#### ③ 자동차 보험료 (224만 세대 인하)

- ▲배기량 **1,600**cc 이하의 소형 자동차, ▲9년 이상된 자동차, ▲ 승합차·화물차·특수자동차 보헊료 **면제**
- 다만,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가 승용차는 보험료 부과
- 자동차 보유세대(294만 세대)의 약 **80%인 224만 세대** 보험료 면제
- \* 자동차 종류, 사용 년 수에 따라 1천원에서 1만원 인하 (월 평균 △6천원)

#### < 보험료가 면제되는 승용차 >



# ④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 (1단계 기준)

## ○ 총괄

구분	대상자	변동액
보험료 인하	583만 세대 (77%)	△월 2만원 (월 9만원 → 7만원) (인하세대 현행 평균보험료의 △20%)
보험료 무변동	140만 세대 (19%)	-
보험료 인상	34만 세대 (4%)	+월 5만원 (월 33만원 → 38만원) (인상세대 현행 평균보험료의 15%) *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%, 재산 상위 3%의 고소득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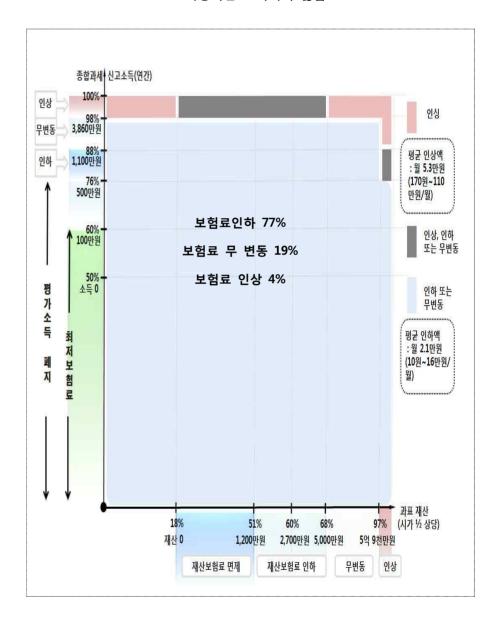
○ 연소득 500만원(필요경비율 90% 고려시, 총수입 연 5천만원) 이하 (572만 세대)

구분	대상자	변동액
보험료 인하	454만 세대 (79%)	△월 2.5만원 (월 7.5만원 → 5만원) (인하세대 현행 평균보험료의 △33%)
보험료 무변동	118만 세대 (21%)	-

○ 연소득 500만원(필요경비율 90% 고려시, 총수입 연 5천만원) 초과 (185만 세대)

구분	대상자	변동액
보험료 인하	129만 세대 (70%)	△월 1만원 (월 16만원 → 15만원) (인하세대 현행 평균보험료의 △6%)
보험료 무변동	22만 세대 (12%)	-
보험료 인상	34만 세대 (18%)	+월 5만원 (월 33만원 → 38만원) (인상세대 현행 평균보험료의 15%)
	(1070)	*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%, 재산 상위 3%의 고소득층

# < 지역가입자 어떻게 달라지나요? > \* 자동차는 고려하지 않음



#### 2. 피부양자

- ◆ 소득이 있는 <mark>피부양자의 3.6%</mark> (7만 세대, 10만명)는 지역가입자로 전환
- ◈ 고소득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여, 형평성 제고

#### 1 소득 초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

- 연간 종합과세소득 합산금액이 2인 가구 중위소득인 3,400만원을 초과하는 **6만 세대** (9만 명)
- \* 피부양자 2.049만명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79만 세대
-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중 대다수는 연금소득자로, 연금소득은 30%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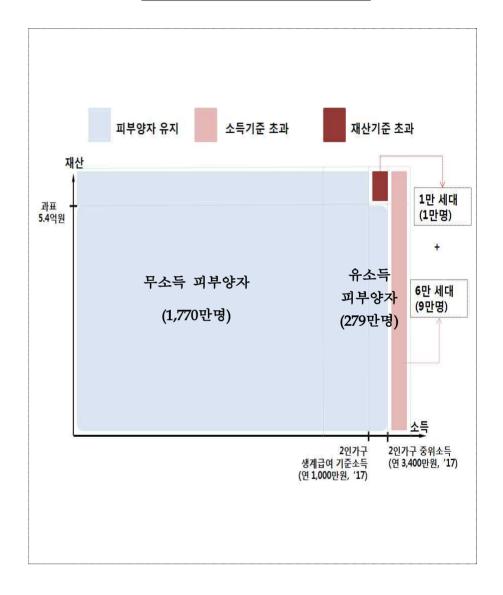
#### 2 재산 초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피부양자

- 과표 기준 5.4억원(시가 10.8억원) 넘는 재산이 있으면서 생계 가능한 수준의 연 소득\*이 있는 **1만 세대** (1만 명)
- \*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수준 (연 1천만원, '17)
- 과표 기준 5.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재산이 있어도 생계 가능한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

#### <1단계,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, 월 평균 보험료>



## < 피부양자 어떻게 달라지나요? >



#### 3. 직장가입자

- ◈ 직장인 99%는 현재와 같이 월급에 대한 보험료 그대로 부담
- ◈ 월급 外 종합과세소득이 많은 고소득 상위 0.8%는 부담 증가

# ① 보험료 무 변동 (99.2%, 1,569만 세대)

○ 보수가 월 7,810만원 이하, 보수 外에 별도의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은 직장인 대다수는 **보험료 변동 없음** 

## ② 보수 外 소득보험료 인상 (0.8%, 13만 세대)

- 보수 外 연간 종합소득이 2인 가구 **기준 중위소득**(3,400만원, '17) **초과**하는 경우, 보수 外 소득보험료 **부담** 
  - 현재도 보수 外 소득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수 外 소득 7,200만원 초과하는 **4만 세대**는 부과기준 변경으로 **월** 평균 **28만원 인상**
  - 보수 外 소득이 연 3,400만원에서 7,200만원에 해당하여, 보험료를 새로이 내게 되는 9만 세대는 월 5만원 부담
  - 보험료가 오르는 13만 세대 평균 연봉은 1.1억원, 보수 外 소득은 1.4억원으로 직장가입자 중 고소득 **상위 0.8%**
  - \* 과세 전 이자소득이 3,400만원이면, 원금은 약 27억 2천만원 보유자(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.25%, 1년 예금 가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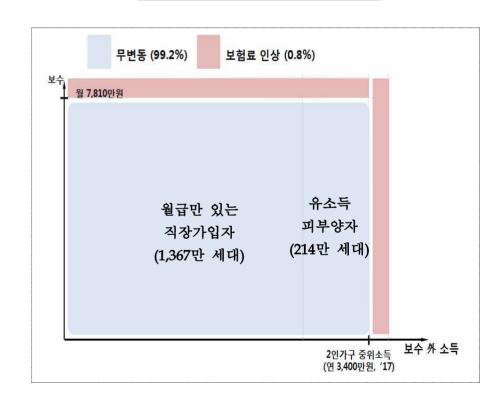
## ③ 보수 보험료 상한선 상향

- 보수가 월 7,81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보험료 인상
  - \* 보험료 상한선 상향 : 월 239만원 → 월 301.5만원

# < 직장가입자 인상 세대 및 인상액 >



# < 직장가입자 어떻게 달라지나요? >



# 참고 2

# 실제 보험료 변동 사례 (1단계)

# 지역가입자

① 송파 세 모녀 : 월 3.5만원 인하

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'송파 세모녀'

<현 항	<b> &gt;</b>	<월 보험료 비교>	** 11 ∟	! 안>
월 4.8만원	3.6만원 (평가소득)	소득 보험료	1.3만원 (최저보험료)	월 13만원
₩	1.2만원	재산 보험료 (전월세)	0	<b>Ä</b>

#### ② 전세 거주자 : 월 6.1만원 인하

B씨(47세, 남), 배우자, 자녀 1명, 연소득 150만원(필요경비율 90% 고려시, 총수입 연 1,500만원) 4천만원 전세 거주. 1.600cc 이하 소형차 보유

<현 행	<현 행>		<현행> <월 보험료 비교>		<개 편 안>	
월 7.9만원	6.3만원 (평가소득)	소득 보험료	1.8만원 (종합과세소득)			
高	1.2만원	재산 보험료 (전월세)	0원	월 1.8만원 <b>坐</b>		
	4천 원	자동차 보험료	0원	₩		

#### ③ 퇴직자 : 월 3.1만원 인하

C씨(43세, 여), 자녀 3명, 연소득 424만원(필요경비율 90% 고려시, 총수입 연 4,240만원) 전세 5천만원, 1,600cc 이하 소형차 보유

<현 항	<현행>		<개 편 안>	
월 7.9만원	6.3만원 (평가소득)	소득 보험료	4만원 (종합과세소득)	
	1.2만원	재산 보험료 (전월세)	7,900원	월 4.8만원
₩	4,100원	자동차 보험료	0원	₩

#### 4 생계형 체납자 : 월 1.2만원 인하

#### D씨(47세), 종합과세소득 없는 저소득층, 전세 2,800만원

<현 행>		<월 보험료 비교>	<개 편 안>		
월 2.5만원 <b>노</b>	1.7만원 (평가소득)	소득 보험료	1.3만원 (최저보험료)	웤 13만원	
	7,900원	재산 보험료	0	<u> </u>	
(-444-)	0	자동차 보험료	0	₩.	

# 피부양자

#### 1 소득기준 초과 → 지역가입자

# E씨, 연금소득 연 3,413만원, 재산 과표 3억 660만원(시가 7억원)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 <개편		! 안>
	_	소득 보험료	9.1만원	월 21.3만원
0	_	재산 보험료	12.2만원	
	_	자동차 보험료	0원	-₩-

## ② 재산기준 초과 → 지역가입자

#### F씨, 연금소득 연 1,941만원, 재산 과표 5.5억원(시가 11억원)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<개 편 안>	
	-	소득 보험료	5.1만원	월 20.2만원
0	-	재산 보험료	15.1만원	
	-	자동차 보험료	0원	(₩)

## 직장가입자

## ① 일반 직장인 : 보험료 변동 없음

#### G씨(39세)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. 연간 보수 4,080만원(월 340만원)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<개 편 안>	
월 10.4만원 <b>坐</b>	10.4만원 *본인부담분	보수 보험료	10.4만원 *본인부담분	월 10.4만원 <u>***</u> *
₩	_	보수 外 소득 보험료	_	₩

#### 2 1주택 소액 임대 소득자 : 보험료 변동없음 (가상사례)

#### H씨, 연간 보수 3,000만원(월 250만원), 월세 임대를 놓은 1주택 보유 (소액의 주택임대소득자)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<개편 안>	
월 7.7만원	7.7만원 *본인부담분	보수 보험료	7.7만원 *본인부담분	월 7.7만원
*	-	보수 外 소득 보험료	-	₩\ •

\*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

#### ③ 고액의 금융소득 보유자 : 월 17.7만원 인상

| **(45세)는 연간 보수 3,540만원(월 295만원), 보수 外 소득 총 연 6,861만원** 사업소득 연 749만원(필요경비율 90% 고려시 7,490만원), 이자소득 연 3,277만원, 배당소득 연 2,835만원

	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<개 편 안>	
	웍 Q만원	9만원 *본인부담분	보수 보험료	9만원 *본인부담분	월 26.7만원 <b>노</b>
- S	± 9€₽	0원	보수 外 소득 보험료	17.7만원	₩-

#### ④ 고액의 상가 임대소득자 : 월 13.3만원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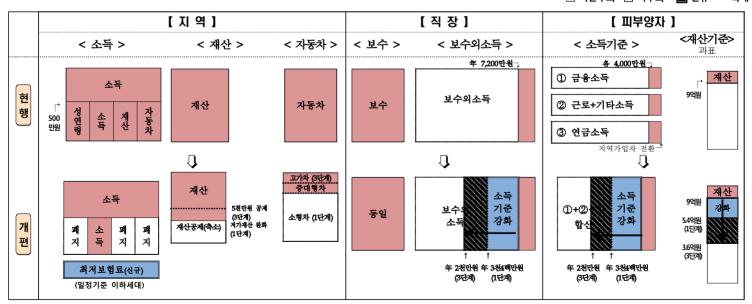
#### J씨(33세)는 연간 보수 3,600만원(월 300만원), 보수 外 소득 총 6,000만원 빌딩소유, 상가 임대사업 연 6천만원(월 500만원)

<현행>		<월 보험료 비교>	<개 편 안>	
월 92만원	9.2만원 *본인부담분	보수 보험료	9.2만원 *본인부담분	월 22.5만원
*	-	보수 外 소득 보험료	13.3만원	₩

- 34 -

# 참고 3 부과체계 개편 비교 표

□ 기존부과 □ 미부과 🗖 신규 ← 확대



	현 행	개 편	현 행	개 편	현 행	개 편
주요내용	<ul> <li>○ 연간소득 500만원초과세대</li> <li>: 소득 + 재산 + 자동차</li> <li>○ 연간소득 500만원이하세대</li> <li>: 평가소득 + 재산 + 자동차</li> <li>* 평가소득 = 성・연령, 재산, 자동차 점수</li> </ul>	<ul> <li>○ 평가소득 폐지, 종합과세소득 적용</li> <li>○ 최저보험료 도입</li> <li>○ 소득보험료 역진성 개선</li> <li>○ 기초재산 공제</li> <li>○ 자동차 보험료 축소</li> </ul>	○ 보수 外 소득 연 7,200 만원 초과 시 부과 ○ 초과방식	○ 부과 대상자 확대 (3,400 → 2,000만원 초과) ○ 공제방식	○ (소득) 금융, 연금 ,근로+ 기타 각 4천만원 초과 ○ (재산) 과표 9억원 초과	<ul> <li>(소득) 합산 소득기준</li> <li>(3,400 → 2,000만원 초과)</li> <li>(재산) 현행 + 5.4(3.6)</li> <li>억원~9억원 초과, 생계가능소득 초과</li> </ul>